

시에라리온 (Sierra Leone)

◎ 주요 변동사항

구 분	2017	2019	비 고
보험료율 (근로자 / 자영자 / 사용자)	5% / 15% / 10%	5% / 15% / 10%	-
연금수급 개시연령	60세	60세	-
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	180개월	180개월	-
노령연금 지급률 (40년 기준)	80%	80%	-
일시금	납부기간 12개월 당 월소득의 1.5배 지급	납부기간 12개월 당 월소득의 1.5배 지급	-

1 근거법 제정 시기

- 최초 및 현행법 : 2001년(사회보장, 2002년 시행)

2 제도형태

- 사회보험제도

3 적용대상

- 당연적용 : 모든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근로자
- 임의적용 : 자영자 및 이전 당연적용 가입자이었던 자

4 재원조달

- 가입자 : 월 소득의 5%, 임의가입자는 월 소득의 15%
- 자영자 : 월 소득의 15%
- 사용자 : 월 소득의 10%
- 정 부 : 사용자로서 보험료 납부, 2002년 1월 1일 이전에 채용된 공공부문 근로자의 경우 월 소득의 2.5% 추가 부담, 경찰과 군인에 대해서는 4.5% 추가 부담

※ 보험료 부과를 위한 하한/상한소득 기준 없음

○ 노령연금

- 가입기간(납부 또는 크레딧) 최소 180개월 이상인 60세 도달자 (군인과 경찰은 55세 도달)
- 2002년 1월 1일 기준 근로하고 있는 공공부문 근로자들에게는 2001년 이전의 보험료 납부기간을 인정해줌
- 조기연금 : 가입기간(납부 또는 크레딧) 180개월 미만인 55세 도달자
- 노령부가금 : 퇴직 시 노령연금 수급권자에 지급
- 노령일시금 : 가입기간(납부 또는 크레딧) 최소 180개월 이상인 55세 도달자
- 노령연금 및 노령일시금은 해외지급 불가

○ 장애연금

- 가입기간(납부 또는 크레딧)이 180개월 이상이거나 장애발생 이전 3년 동안 최소 12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한 기간을 포함하여 최소 60개월 이상 가입(납부 또는 크레딧)한 완전 영구 근로능력상실로 판정된 60세 미만자
- 정상퇴직연령 도달 전 청구 시 1년당 6개월의 납부기간이 크레딧 인정됨
- 2002년 1월 1일 기준 근로하고 있는 공공부문 근로자들에게는 2001년 이전의 보험료 납부기간을 인정해줌
- 장애정도는 의료위원회에서 심사
- 장애연금은 정상퇴직연령에 정지되며 노령연금으로 대체됨
- 장애일시금 : 영구 및 완전 근로능력 상실로 평가되나 장애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
- 장애연금 및 장애일시금은 해외지급 불가

○ 유족연금

- 사망자가 노령 또는 장애 연금수급자였거나 수급자격이 있는 자 또는 사망 이전 3년 동안 최소 12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한 기간을 포함하여 가입기간(납부 또는 크레딧)이 60개월 이상인 경우
- 2002년 1월 1일 기준 근로하고 있는 공공부문 근로자들에게는 2001년 이전의 보험료 납부기간을 인정해줌
- 유족범위 : 배우자, 18세 미만 완전고아(종일제 학생은 23세, 장애자녀는 연령제한 없음), 부모
- 배우자 재혼 시 연금 정지
- 유족일시금 : 사망자가 유족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
- 유족연금 및 유족일시금은 해외지급 불가

○ 노령연금

- 가입자 평균소득의 30%에 180개월 초과 가입기간(납부 또는 크레딧) 12개월 당 평균소득의

2%씩 가산함

- 최저 노령연금월액 : 전국 월 최저임금의 50%
- 전국 월 최저임금은 500,000 leones
- 최고 노령연금월액 : 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80%
- 조기연금 : 60세 이전에 조기 수급한 1년당 4%씩 연금 감액
- 노령부가금 : 12개월분의 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
- 급여조정 : 급여는 국가사회보장 및 보험신탁의 재원을 바탕으로 생계비 변동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정
- 노령일시금 : 보험료 납부기간 12개월 당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1.5배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

○ 장애연금

- 가입자 평균소득의 30%에 180개월 초과 가입기간(납부 또는 크레딧) 12개월 당 평균소득의 2%씩 가산함(가입자의 가입기간이 60개월 이상 180개월 미만일 경우, 가입자 납부기간과 180개월의 차이는 크레딧으로 인정됨)
- 정상퇴직연령 전 청구 시, 1년마다 가입기간 6개월로 인정됨
- 최저 장애연금월액 : 국가 월 최저임금의 50%
- 전국 월 최저임금은 500,000 leones
- 급여조정 : 급여는 국가사회보장 및 보험신탁의 재원을 바탕으로 생계비 변동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정
- 장애일시금 : 보험료 납부기간 12개월 당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의 1.5배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

○ 유족연금

- 배우자연금 : 사망자가 수급하였거나 수급자격이 있던 노령 또는 장애연금액의 40% 지급.
배우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균분 지급
- 고아연금 : 사망자가 수급하였거나 수급자격이 있던 노령 또는 장애연금액의 최대 60%까지 지급
- 부모연금 : 배우자 또는 자녀가 없을 경우 지급, 근로하거나 연금 수급 중인 부모에게 유족 연금 12개월분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, 근로하지 않거나 연금 수급자가 아닌 경우 유족연금 24개월분을 지급
- 유족연금 총액은 사망당시 수급하였거나 수급자격이 있던 노령 또는 장애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
- 급여조정 : 급여는 국가사회보장 및 보험신탁의 재원을 바탕으로 생계비 변동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정
- 유족일시금 : 보험료 납부기간 12개월 당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의 1.5배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

7 관리운영기관

- 노동사회보장부(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Security)
 - 전반적 감독
 - <http://www.labour.gov.si>

- 국민사회보장보험신탁(National Social Security and Insurance Trust)
 - 제도 운영
 - <http://www.nassitsl.org.si>

<2019년 ISSA 자료>